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학생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건의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 년 월 일

청 원 인

성 명 : 대표발의자 - 김보은
공동발의자 - 정민창 김무겸 박관우 문찬솔
민다예 이정민 김울 허민
홍소정 김세원 장현오 윤상훈
전명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로 2

전화번호 : 051-892-9505(휴대전화:010-3900-0745)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엄광로 2
	성명 : 김보은
건명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학생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11년 월 일

소개의견

청원인 김보은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2011년 제 9회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학생자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하나가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초중등 교육법 상의 학생자치에 대한 법률은 학생자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학칙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학생자치의 기본적 사항을 학칙에 따르는 것은 학교의 자의로 오용 또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학생자치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생자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법안으로 구체화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학생자치에 대한 법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 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교내 학생 자치 기구는 교직원, 학부모 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 17조의 2 (교내 학생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

- ① 학생은 교직원의 별다른 승인 없이, 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추천서로 교내 학생 자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따른 추천서는 전 교직원의 1%와 학생의 2%에게 받도록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르도록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최소 10시수 이상을 제공하되, 시수 활용은 자치기구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 외 방침은 학칙에 따른다.

신구문대조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원이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

현행	개정문
초·중등 교육법 제 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u>권장</u>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u>기본적인</u> 사항은 <u>학칙</u> 으로 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 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교내 학생 자치 기구는 교직원, 학부모 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 17조의 2 (교내 학생자치 단체의 조

	<p>직과 운영)</p> <p>① 학생은 교직원의 별다른 승인 없이, 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추천서로 교내 학생 자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따른 추천서는 전 교직원의 1%와 학생의 2%에게 받도록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르도록 한다.</p> <p>③ 학교는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최소 10시수 이상을 제공하되, 시수 활용은 자치기구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 외 방침은 학칙에 따른다.</p>
--	--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학생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법 학생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1. 제안이유

경향 신문이 조사한 학생 자치활동의 실태에 대한 한 기사이다.

최근 인천의 한 고교에서는 학교 내 일부동아리가 말 없이 사라졌다. 학생회장 수준에 따르면 학교는 최근 인천시 교육청이 지정한 10대 명문고로 선정되면서, 학업 성과를 보고해야한다는 이유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노래나 춤 동아리를 해산하는가 하면, 축제를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학생회에 통보했다.

2. 주요골자

□ 초·중등 교육법 제 17조 학생자치에 대한 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학생자치 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교내 학생 자치 기구는 교직원, 학부모 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 17조의 2 (교내 학생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

- ① 학생은 교직원의 별다른 승인 없이, 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추천서로 교내 학생 자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따른 추천서는 전 교직원의 1%와 학생의 2%에게 받도록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르도록 한다.
- ③ 학교는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최소 10시수 이상을 제공하되, 시수 활용은 자치기구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 외 방침은 학칙에 따른다.

□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문
초 중등 교육법 제 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u>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u>	제17조(학생자치 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교내 학생 자치 기구는 교직원, 학부모 단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 17조의 2 (교내 학생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

	<p>① 학생은 교직원의 별다른 승인 없이, 이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추천서로 교내 학생 자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p> <p>② 제 1항에 따른 추천서는 전 교직원의 1%와 학생의 2%에게 받도록 하며, 그 외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르도록 한다.</p> <p>③ 학교는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최소 10시수 이상을 제공하되, 시수 활용은 자치기구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 외 방침은 학칙에 따른다.</p>
--	--

청원인 성명 : 김 보 은

청원인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2동 업광로 2

청원인 전화번호 : 051-892-9505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